

요 약

- FIDIC에서는 1999년에 기존 계약조건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추가수정한 형태가 아닌 4개의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정하였음.
- 이러한 개정은 기존의 계약조건과 시각을 달리하는 입장이라는 의미에서 개정신판으로 부름.
- 개정신판은 기존의 계약조건이 현실과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평등의 실현 및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함.
- FIDIC 개정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는 프로젝트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(risk)를 계약조건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이에 따른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소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음.
- 개정신판과 기존 계약조건과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.
- 계약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조건에서는 엔지니어(engineer)의 중립성, 독립성을 강조하였으나, 개정신판에서는 엔지니어를 발주자의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클레임 제기의 절차 및 기한 준수를 Old Book에서는 강조하는 수준이었으나, New Book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적 권리를 박탈하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함.
- Silver Book에는 다른 계약조건과 달리 엔지니어가 존재하지 않음. 따라서 발주자가 엔지니어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음.
- 예측하지 못한 물리적 여건과 조우시 다른 계약조건은 계약금액 조정 또는 공기연장이 가능하나 Silver Book의 계약조건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보상을 허용하지 않음.
- 향후 건설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「국가계약법」과의 차이로 인한 국제 분쟁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계약조건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.
-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FIDIC의 클레임 제기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야 실제로 행한 공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.
- 클레임 통지를 28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가 박탈됨.
- 상호 협의에 의한 클레임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강제화되어 있음.
- 계약관리전문가를 사업 초기에 투입하여 계약관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계약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건설업체가 숙지하여야 함.